

[별표 2] <개정 2019.12.18.> <개정 2021.09.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해당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령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의 소송 관련 서류 4. <삭제 2019.12.18.>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업무] <신설 2019.12.18.>		
비공개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담당 부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금융거래 정보	모든 부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4.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방화벽 정책, 원격접근 통제시스템, 시스템 계정발급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업무] <신설 2019.12.18.>		
비공개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담당 부서
정보통신망 구성도	창업진흥원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화지원실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시스템 보안 솔루션 현황 관련 사항 등	정보화지원실
정보보호 대책	사이버부분 위기관리 매뉴얼 등	정보화지원실
보안업무	보안감사 계획 및 수립, 보안업무 심사 분석, 자체불시 보안점검 실시	정보화지원실

청사관리	당직명령부(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 없는 정보는 공개)	경영지원실
기타 정보통신망 관련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시스템 로그파일,	정보화지원실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2.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3.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업무] <신설 2019.12.18.>		
비공개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담당 부서
청사/관사 관련 정보	청사/관사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영지원실
인감관리대장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 이익을 해할 수 있음	경영지원실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모든 부서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업무] <신설 2019.12.18.>		
비공개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담당 부서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모든 부서
법 제9조제1항제5호 <개정 2021.09.01.>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적용 사례	1. 불시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각종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삭제 2019.12.18.>
	5.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9.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업무] <신설 2019.12.18.>

비공개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담당 부서
감사 관련 정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실
인사관리 관련 정보	임용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 위촉, 임용 관련 내부 계획, 결과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재혁신실
조직 개편 및 직제 개정 관련 정보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재혁신실
정원 조정 관련 정보	정원 조정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기획조정실 인재혁신실
민원·제도개선 등	국민신문고를 포함한 각종 민원 질의·건의·탄원 등과	모든 부서

	제도 개선을 검토 추진중인 자료 등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모든 부서
각종 평가·심의·운영·조 정위원회	추진계획 및 결과, 회의록 등 평가 진행과 의사결정과정 등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이 초래되는 자료 등	모든 부서
계약 관련 업무	입찰종료 이전 참가 관련 서류, 예정 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모든 부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공개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정보	
업무 관련 검토 자료	결정 이전 자료 검토, 연구·협의 관련 자료,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모든 부서
기술개발 관련 계획서	기술개발, 창업아이템 관련한 기술이나 이의 실현을 위한 계획으로 공개시 원활한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	모든 부서

법 제9조제1항제6호 <개정 2021.09.01.>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적 용 사 례 < 신 설 2 0 1 9. 12. 18.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인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 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직원의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 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 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한다. 4. <삭제 2021.09.01.> 5.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p>※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p>
---	---

[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업무] <신설 2019.12.18.>

비공개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담당 부서
민원신청·답변	민원 신청 내용 및 처리내용 포함 민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모든 부서
임직원 범죄 관련 정보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자료	감사실
자체 감사	본원 자체감사 결과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있는 자료	감사실
공인(공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과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전체 지원비용 및 건수 등은 공개)	모든 부서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개 시 지식재산권의 도용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②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	--

[법 제9조제1항제7호 관련 업무] <신설 2019.12.18.>

비공개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담당 부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창업기업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단체·개인이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단체 및 개인의 영업, 기술, 인사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모든 부서
창업기업 아이템 개발 내용 및 결과	개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특허 등 기술누출이 우려되는 자료 등	모든 부서
계약 입찰 관련 자료	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 및 입찰시 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자료(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매출액 및 환급액, 부가가치세액, 용역 참여 기술자의 경력 등) 등	모든 부서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